

입양후 복지서비스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金亨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 요보호아동에 대해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보호조치는 아동에게 새로운 가정을 제공함으로써 가정에서 건전하게 성장하게 하는 입양제도이다. 그동안 입양에 관해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고, 특히 최근에는 늘어나는 요보호아동의 수와 국외입양에 반하는 국민적 여론에 직면하여 국내입양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급히 요구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입양이 성립된 이후 입양아동, 입양부모와 친부모에게 제공되는 입양후 복지서비스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요보호아동과 입양의 현황을 살펴보고 입양후 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서론

최근의 경제위기에 따른 대량실업,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가족해체, 그리고 아동학대와 방임 등에 기인하여 증가되고 있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복지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새로운 보호자를 필요로 하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보호조치는 입양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하여 새로운 가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국외입양에 반하는 국민적 여론에 직면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¹⁾.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요구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입양을 한 후 입양된 아동, 입양부모, 그리고 친부모에게 제공되는 입양후 복지서비스의 개발과 활성화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요보호아동과 입양의 현황을 살펴보고, 입양 관련법과 수집된 자료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입양후 복지서비스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미국의 입양후 복지서비스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입양후 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배태순, 「국내 입양발전을 위한 입양관련 프로그램개발 및 입양법개정 제안」, 『한국아동복지학』, 제7호, 1998, pp.127~155.

2. 문제제기

1) 요보호아동의 증가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한 대량실업과 관련된 가족해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서구의 경우와 같이 급속한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증가되는 이혼과 아동 학대와 방임의 결과,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수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다. 2000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2조에 의하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되어 있다.

1990년 이후 요보호아동의 발생유형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전체적인 요보호아동의 수는 1990년 5,721명에서 1996년 4,951명으로 감

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97년에는 6,734명으로 전년대비 136%가 증가되었고, 1998년에는 9,292명으로 또 다시 전년대비 138%나 증가되었다. 1996년에서 1998년의 최근 2년 사이에 IMF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요보호아동의 수가 거의 배로 증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게 된 것이다.

또한 요보호아동의 발생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미혼모아동은 1996년까지 감소의 추세를 보이다가 1998년에 급속히 증가되었고, 가출 부랑아는 1993년 이래 지속적인 증가의 추세를 나타내어 1998년에는 두 번째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에서 1998년까지 기아와 미아의 수는 별다른 증감의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그림 1 참조).

2) 보호조치로서의 입양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3조 제2항에서는 아동복지의 기본이념을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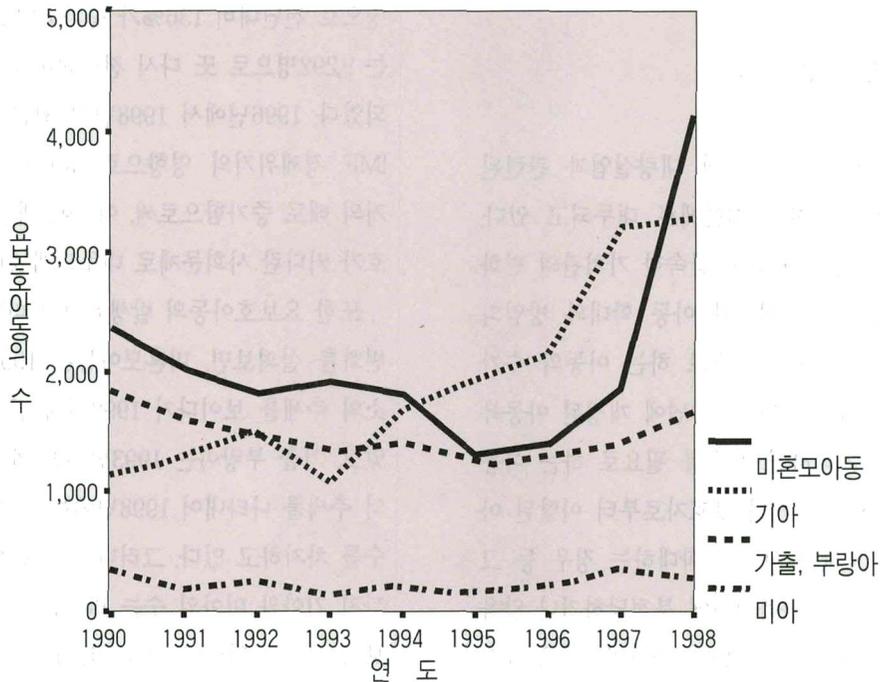
표 1. 요보호아동의 발생유형

(단위: 명)

연 도	미혼모아동	기 아	가출·부랑아	미 아	계
1990	2,369	1,844	1,148	360	5,721
1991	2,020	1,610	1,277	188	5,095
1992	1,813	1,481	1,485	241	5,020
1993	1,904	1,330	1,080	137	4,451
1994	1,781	1,386	1,664	192	5,023
1995	1,285	1,227	1,915	149	4,576
1996	1,379	1,276	2,107	189	4,951
1997	1,833	1,372	3,187	342	6,734
1998	4,120	1,654	3,241	277	9,292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998.

그림 1. 요보호아동 발생유형의 변화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아동은 가정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아동복리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르면, 보호조치는 첫째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시설보호, 둘째로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를 위탁하는 위탁보호, 셋째로 보호자 또는 대리 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입양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1990년 이후의 보호조치 유형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시설보호의 아동수는 1990년에서 1995년까지는 꾸준한 감소를 보이다가 1996년부터는 증가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경제위기의 시기인 1998년에는 5,112명으로 1997년의 3,917명보다 31%나 증가되었다. 또한 위탁보호의 아동수도 시설보호의 아동수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입양을 살펴보면, 1990년 이래 1998년까지 전체 요보호아동의 15% 미만에 머물고 있어 매우 낮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아동복지법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강조한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아동복지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볼 때 커다란 문

표 2. 요보호아동의 보호조치 유형

(단위: 명, %)

연도	시설보호	위탁보호	입양	기타 ¹⁾	계
1990	3,734	1,134	853 (14.9)	-	5,721
1991	3,414	999	682 (13.4)	-	5,095
1992	3,122	1,212	686 (13.7)	-	5,020
1993	2,940	943	568 (12.8)	-	4,451
1994	2,953	927	760 (15.1)	383	5,023
1995	2,819	505	472 (10.3)	780	4,576
1996	3,161	727	479 (9.7)	584	4,951
1997	3,917	1,209	898 (13.3)	710	6,734
1998	5,112	2,353	1,283 (13.8)	544	9,292

주: 1) 1994년부터 구분하기 시작하였고, 소년 소년가장세대(새싹가정)를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998.

제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늘어가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보호조치가 입양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입양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그 동안 입양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1999년 우리나라에 있는 4개 해외입양기관²⁾의 지원으로 우리나라 입양 현황을 살펴보고, 아울러 입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를 수행하였다³⁾. 특히 지난 2000년 9월에는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홀트아동복지회에서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외국의 입양서비스 현황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살펴봄으로써,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의 개정과 입

양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논의를 촉진한 바 있다⁴⁾.

3. 입양의 현황

우리 나라 입양제도의 변천을 간략히 살펴보면, 본격적인 입양은 한국전쟁 직후의 전쟁고아와 혼혈아에 대한 보호정책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외입양을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61년에는 고아입양특례법을 제정하면서 국외입양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1976에는 입양특례법을 제정하여 국내입양의 부양책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1985년과 1996년에는 국외입양 전문중단계획을 발표하여 국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가정위탁제도의 도

2)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3) 변용찬·이삼식·김유경, 『우리 나라 입양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4)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자료집』, 홀트아동복지회, 2000.

입을 포함하는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입양사업을 진행하고 있다⁵⁾.

특히 1999년과 2000년에 걸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특례법 시행령, 그리고 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국외입양 관련 절차를 보완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입양제도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0년에 개정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제1조에서는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데 특례법의 목적이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새로운 가정을 법적으로 제공하는 입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총 27개의 입양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그 중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4개 입양기관(홀트아동복지회, 동방아동복지회, 대한

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이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을 병행하고 있고, 나머지 23개의 입양기관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고 국내입양만을 담당하고 있다.

〈표 3〉은 국내·외 입양 현황을 요약한 것이다.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을 합한 총 입양아동의 수는 1990년 4,609명에서 1991년 3,438명으로 급속히 감소하였는데, 이는 정부에서 국외입양의 단계적 축소정책을 추진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91년 이후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내입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또한 요보호아동의 수가 감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로 인하여 총 입양아동의 수는 1991년 이후에는 거의 변동이 없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입양을 살펴보면, 1990년부터 1998년까지 해에 따라 약간의 증감은 있으나 대체로 전

표 3. 국내·외 입양 현황

(단위: 명, %)

연도	국내 입양	국외 입양	총 입양
1990	1,647 (35.7)	2,962 (64.3)	4,609
1991	1,241 (36.1)	2,197 (63.9)	3,438
1992	1,190 (36.8)	2,045 (63.2)	3,235
1993	1,154 (33.5)	2,290 (66.5)	3,444
1994	1,207 (34.8)	2,262 (65.2)	3,469
1995	1,025 (32.0)	2,180 (68.0)	3,205
1996	1,229 (37.1)	2,080 (62.9)	3,309
1997	1,412 (40.7)	2,057 (59.3)	3,469
1998	1,426 (38.8)	2,249 (61.2)	3,675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998.

5) 변용찬·이삼식·김유경, 『우리 나라 입양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체 입양의 약 40% 미만을 차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해외로 우리 나라의 아이들을 보내는 것은 국가의 수치라는 국민 여론에 떠밀려 국외입양의 감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 나라 입양정책의 방향과 최근 경제위기와 가족해체에 기인한 요보호아동수의 증가를 고려할 때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4. 입양후 복지서비스(post-adoption services)의 현황

1) 우리 나라 입양후 복지서비스의 현황

입양후 복지서비스(post-adoption services)란 요보호아동에게 새로운 입양가정이 제공되는 법적인 입양절차가 마무리된 후에, 입양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입양과 관련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총괄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입양 관련 삼자(adoption triangle)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입양이 입양된 아동, 입양부모와 친부모간의 관계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기에 지역사회(community)가 추가됨으로써, 입양이 이루어지는 지역사회와 전체사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⁶⁾.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입양후 복지서비스는 '입양의 사후관리'에 대한 논의로 국한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입양의 사후관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례법 제12조에 따르면 입양기관의 의무 중 하나로서,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 성립후 6개월 까지 입양부모와 입양아동의 상호적응상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후관리를 하고, 국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사후관리는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2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입양후 사회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필요한 상담과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국외입양에 대한 사후관리는 1999년 개정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에서 국내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을 원하는 외국등과 체결하는 입양 업무에 관한 입양협약에 입양부모와 입양아동간 적응상태의 조사와 양육지도 등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과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아동복지전문가의 확보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국외입양 아동에 대해서도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1999년에 개정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서는 특례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후관리"로서 세 가지 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첫째, 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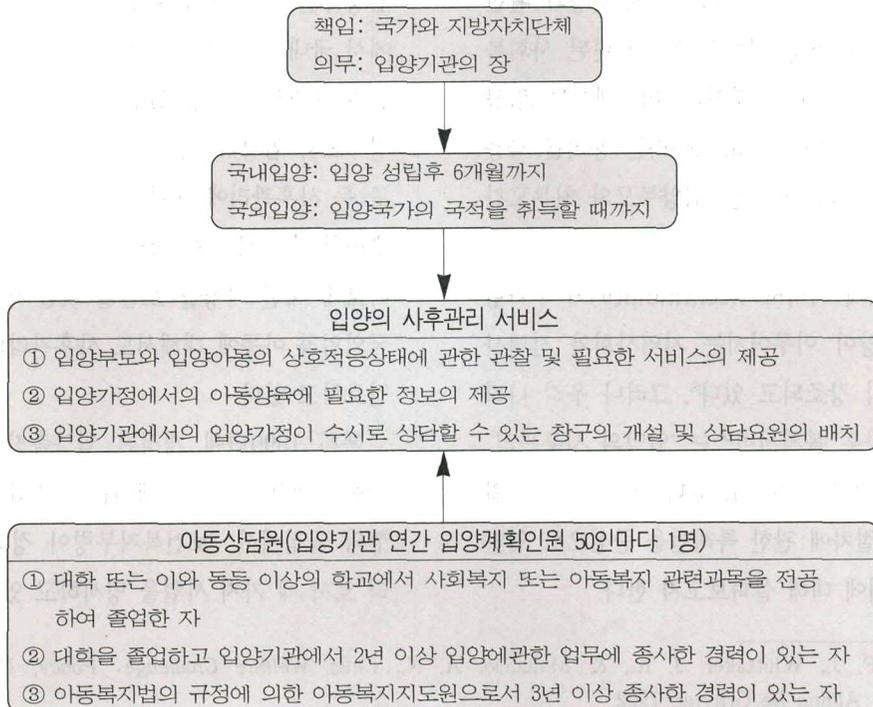
6) Pecora, P. J., Whittaker, J. K., & Maluccio, A. N., *Child Welfare Challenge: Policy, Practice, and Research*, Aldine De Gruyter, 1992.

양부모와 입양아동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한 관찰 및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 둘째,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그리고 셋째로 입양기관에서는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입양관련 법에서는 입양기관의 아동상담원이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서는 입양기관의 종사자인 아동상담원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입양기관은 연간 입양계획인원 50인마다 1명의 아동상담원을 채용하여야 하고, 아동상담원의 자격으로서 다

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복지 관련과목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 둘째로 대학을 졸업하고 입양기관에서 2년 이상 입양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셋째로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으로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또한 특례법 시행규칙은 아동상담원의 업무로서, 입양될 아동과 입양희망가정과의 상담, 그 가정상황의 조사 및 입양된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사후지도들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고 있다. 우리 나라 입양의 사후관련 서비스 체계를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우리 나라 입양의 사후관리 서비스 체계



2) 우리 나라 입양후 복지서비스의 문제점

우리 나라 입양후 복지서비스의 문제점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다. 첫째로,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입양후 복지서비스가 입양 관련법에서의 규정과 입양기관에서의 사회복지 실제에서 입양의 사후관리에 국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후관리라는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입양의 사후관리는 입양 절차가 마무리된 후 이를 관리하는 데에 그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입양과 관련된 입양아동, 입양부모, 친부모와 지역사회에 입양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의 해결과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입양후 사회복지서비스라고 볼 때, 우리 나라의 사후관리 서비스는 입양후 복지서비스라기보다는 입양이라는 법적 절차를 마무리짓는 사후처리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넓은 의미에서 입양의 절차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입양기관에서의 사후관리는 입양과 관련된 정보의 관리, 즉 특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입양아동 및 입양부모된 자에 관한 입양관계 서류를 영구히 보존하는 것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로, 아동복지법에서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로서의 입양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2000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10조에서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입양이라는 보호조치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이 제2항에서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

양육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게 하는 것이 아동복지의 기본이념이라고 할 때,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요보호아동들에게 입양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하여 새로운 가정을 제공하는 것은 아동복지의 가장 중심적인 보호조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입양후 복지서비스에 관한 규정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현재 특례법, 특례법 시행령과 특례법 시행규칙에서는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만 있고, 사후관리도 국내입양의 경우 입양성립후 6개월까지, 그리고 국외입양의 경우 입양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로 제한함으로써 전문적인 입양후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세 가지 사후관리 서비스를 입양아동과 입양부모에게 제공할 충분한 시간이 마련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넷째, 아동상담원이 사후관리를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특례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아동상담원은 입양될 아동, 입양희망가정과의 상담, 그 가정상황의 조사 및 입양된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사후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아동상담원이 입양 이전의 상담과 가정조사, 그리고 입양 이후의 사후관리를 함께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실천의 사례관리(case management)에 입각하여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게 입양 이전부터 입양 이후까

지 일관적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입양기관에서 이미 아동상담원의 업무가 과다하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아동상담원이 충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계획을 통하여 입양아동, 입양가정, 그리고 친부모에게 입양후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3) 미국의 입양후 복지서비스의 현황

미국의 입양과 관련된 사회복지서비스는 1980년에 연방정부의 입양보조 및 아동복지법(Federal 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 of 1980)에 의하여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입양보조 및 아동복지법의 기본원칙은 아동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인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요보호아동에 대하여 입양을 통하여 새로운 가정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특히, 입양보조 및 아동복지법은 입양이 어려운 아동, 즉, 장애를 가진 아동과 나이가 많은 아동의 입양을 위한 경제적인 보조를 지원함으로써 입양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특히 1984년에는 북미 입양회(North America Post-Legal Adoption Committee)가 입양후 복지서비스에 관한 성명서(Model Statement on Post-Legal Adoption)를 발표함으로써,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후 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

되기 시작하였다⁷⁾.

미국의 입양후 복지서비스는 입양아동, 입양부모, 그리고 친부모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크게 나뉘어 질 수 있다. 첫째로, 입양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친부모로부터 분리된 것과 관련된 문제와 새로운 입양가정과 사회에서 입양아동으로 살아가는 것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개인상담(individual counseling), 청소년기에 입양아동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됨으로써 겪게 되는 문제들에 대한 위기 특별상담(crisis-oriented intensive counseling)이 있다. 아울러, 입양아동으로서 공통으로 갖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른 입양아동들과 함께 하는 지지집단활동(support groups)이 매우 유용한 복지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둘째로, 입양부모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입양아동에 대한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입양부모로서 겪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는 개인 상담과 위기 특별상담이 있다. 또한 입양부모들이 자조집단(self-help groups)을 조직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며 입양과 관련된 많은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고, 대표적인 자조집단으로는 미국입양가정회(Adoptive Families of America)가 있다. 아울러 북미 입양아동 위원회(North American Council on Adoptable Children)를 중심으로 동료체계(buddy system)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는 입양을 계획하는 부모가 이미 입양을 한 부모와 연계되어 입양에 필요한

7) Pecora, P. J., Whittaker, J. K., & Maluccio, A. N., *Child Welfare Challenge: Policy, Practice, and Research*, Aldine De Gruyter, 1992.

정보와 경험을 얻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셋째로, 친부모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아동을 입양시킨 후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개인상담과, 비슷한 처지의 다른 친부모들과 함께 하는 지지집단활동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입양아동의 대부분이 청소년기에 입양아동임을 깨닫게 되어 친부모를 찾게 되는데, 이러한 친부모 찾기(searching for birth families)에 직면한 친부모들에 대한 특별상담(intensive counseling)이 제공되고 있다⁸⁾. 이러한 여러 가지 입양후 복지서비스를 포함한 입양관련 정보와 자료의 중심체로서, 미국의 보건복지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서는 국립입양정보센터를 인터넷에 개설하여 입양후 복지서비스를 포함하여 입양과 관련된 포괄적인 자료,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관련법들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 관리하여, 입양아동, 입양부모, 친부모, 그리고 입양관련 전문가와 정책입안가들에게 제공하고 있다⁹⁾.

5. 입양후 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 요보호아동에 대해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보호 조치는 아동에게 새로운 가정을 제공함으로써

가정에서 건전하게 성장하게 하는 입양제도이다. 그 동안 입양에 관해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고, 특히 최근에는 늘어나는 요보호아동의 수와 국외입양에 반하는 국민적 여론에 직면하여 국내입양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급히 요구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입양이 성립된 이후 입양아동, 입양부모와 친부모에게 제공되는 입양후 복지서비스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입양후 복지서비스의 현황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특히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되어 있듯이, 입양후 복지서비스는 입양성립후 6개월까지의 사후 관리에 국한되어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입양기관에서는 입양후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아동상담원의 업무과중과 입양후 복지서비스의 개발에 대한 관심의 부족으로 인하여, 미국의 경우와 같이 독립된 입양후 복지서비스과(post-adoption department)가 존재하기보다는, 후원과에 속하여 외국에 입양된 아동들의 모국방문이나 친부모 찾기에 치중하고 있는 형편이다. 입양이 정착되는 6개월 동안의 사후관리와 해외입양아들의 모국방문이나 친부모 찾기가 입양후 복지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하나 유일한 부분이 될 수는 없다. 입양과 관련된 삼자, 입양아동, 입양부모와 친부모에 대해 입양 이후에 입양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입양후 복지서비스가 개발되

8) Pecora, P. J., Whittaker, J. K., & Maluccio, A. N., *Child Welfare Challenge: Policy, Practice, and Research*, Aldine De Gruyter, 1992.

9) 국립 아동정보 센터의 웹주소는 www.calib.com/naic이다.

고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입양후 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양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아동복지법에서 요보호아동에게 새로운 가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보호조치인 입양의 중요성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입양후 복지서비스의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즉, 사후관리라는 용어를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입양후 복지서비스로 바꾸고, 입양 성립후 6개월까지라는 규정을 삭제하여 입양아동에게 평생동안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입양기관에서 입양후 복지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우선 독립된 입양후 복지서비스 과를 신설하고, 입양후 복지서비스의 담당을 위해서 가정조사 및 입양업무를 담당하는 기존의 아동상담원과는 별도의 입양후 서비스 전문가를 교육 채용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입양아동, 입양부모, 그리고 친부모에 대한 개인상담, 위기 특별상담, 지지집단활동, 자조집단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입양후 복지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전반적인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1999년 7월에 개원하여 운영되고 있는 입양정보센터의 강화가 요구된다. 입양정보센터는 입양인 관련 자료를 종합정보망으로 구축하고, 해외입양인의 가족 찾기와 국내체류 편의를 지원하고,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미국의 경

우와 같이 입양정보센터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설립하여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우리나라의 입양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의 중심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에 급속히 증가하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입양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증대하기 위한 입양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